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008-084호 (사건번호 : 2021조총0078)

안 건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3. 5. 10.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 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명)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21.8.13.)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관할구역내 같이 수집·보관하고 있다. 명단을 '21. 8. 13. 기준 아래와

개인정보파일	수집·이용 항목		보유건수(명)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일부)	'21.3.29.~ '21.8.13.	1,488

나. 개인정보 노출 관련 사실관계

1) 노출 규모 및 항목

1,488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며, 이름·생년 월일·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480명·비암호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유출 인지 및 대응

잍	일시 피심인의 노출 인지·대응 내용		
2021.	7. 22.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 명단'을 잘못 게재	
	8. 12.	담당자가 잘못 게재한 사실을 스스로 발견 , 첨부 파일 삭제 조치	
	8. 13.	개인정보 유출 신고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 개별 통지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 홈페이지 공지	
	8. 17.	개인정보 유출 대응 재발 방지대책 수립	

3) 유출 경위

업무 담당자가 새소식 게시판에 '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 안내'자료를 게시하면서, 실수로 '

명단(엑셀)'을 게재('21.7.22.)하였고, 이후 담당자 본인이 노출 사실을 발견하고 스스로 삭제('21.8.12.)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1)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 명단(엑셀)'을 보관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2. 2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3.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 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

명단(엑셀)'을 보관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 제4의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4조의2제2항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ਸਦਲ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카.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의3호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위 2023. 3. 8.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 가중)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별표2]의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감경)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사전통지 전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고, 조사 기간 중 일관 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별표1]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감경기준(제7조 관련) >

기준	감경사유	감경비율
조사 협조·	1. 과태료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기준금액의 50% 이내
자진 시정 등	2.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기준금액의 40% 이내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 감경을 거쳐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 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D) D=(A+B-C)
제24조의2제2항(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제75조제2항제4의3호	600	, ,	300	300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 제4의3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5월 10일

- 부위원장 최장혁 (서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